

• •
특집 — 2010년 지방재정세제 전망 및 운용방향



2010년 지방세정 운영방향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장

이 보 환

I. 머리말

지난해 고유가와 미국발 금융악재로 인한 극심한 불경기로 국민경제가 크게 위축되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조기집행, 조세감면 등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노력에 적극 매진하여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으나, 그에 상응하여 지방재정 여건은 악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지방세정 분야의 노력은 지방재정의 근간인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운영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이를 통하여 납세자의 자발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따라서, 2010년도 지방세정은 지방세 과세의 형평성과 합리성 확보, 납세자의 신뢰획득을 위하여 지방세정 운영 및 지방세제 전반의 선진화를 도모하는 원칙하에서 추진하고자 한다.

특히, 금년에는 지난해부터 강력하게 추진해 온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등 지방세 과세기반 확충을 위한 노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관련 제도도 근본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대두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비전 달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지방세제 개선 등 새로운 정책 환경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부분의 국민이 납부하는 재산과세 제도의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합리적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지방세 과세표준제도 선진화, 지방세 체납정리제도 개선 등 지방세제 운영 전반의 선진화 및 전문화에도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II. 2009년 성과와 반성

1. 지방세정의 주요 성과

1) 주택분 재산세 체계개편 등 재산세제의 합리적 개선

‘08년도까지의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가격이 하락함에도 세부담은 증가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① 주택공시가격 3억~6억이하 구간의 격차율 완화를 위한 과표단계 확대(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② 산출세액과 부과세액이 최대한 일치(격차율 완화)되도록 하는 세율인하, ③ 주택공시가격의 60% 수준의 공정시장가액 도입, ④ 6억초과 주택의 세부담상한을 현행 150%에서 130%로 인하하는 등 지방세법을 개정하였다.

〈 주택분 재산세율 등 개편내용 〉

	개편전			현 행			
	0.4억이하	0.4~1억	1억초과	0.6억이하	0.6~1.5억	1.5~3억	1.5~3억
세율체계	0.15%	0.3%	0.5%	0.1%	0.15%	0.25%	0.4%
과표적용율	매년 5%p 인상('08년 55%)						
세부담상한	3억이하	3~6억	6억초과	3억이하	3~6억	6억초과	
	105%	110%	150%	105%	110%	130%	

▶ 공정시장가액 : 60%(±20%pp)

이러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세액산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부동산시장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최대한 국민들의 세부담을 적정화할 수 있도록 산정하였다.(토지·건축물 100분의 70, 주택 100분의 60)



이러한 개선 노력의 결과, '08년도 주택분 재산세 환부 등을 통한 국민 세부담 경감효과는 2,646억여원('08년 환급분 1,314억, '09년 1,332억)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한편, 재산세 세율인하, 공정시장가액비율 결정 및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율 인하 등 '09년 재산세제 개편에 따라 감소하는 지방세수는 부동산교부세로 보전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어려운 지방재정여건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

2) 주택시장 안정화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지방세 지원

지난해에는 주택 거래실적 급감, 미분양주택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침체된 주택경기를 안정화하고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전세계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업의 납세협력비용 등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 지원대책을 중점 추진하였다.

첫째, 얼어붙은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미분양주택 거래세 감면을 전국으로 확대 지원하였다. 당초 '09년 6월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등록세율을 50%(2%→1%) 감경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미분양주택 거래세 감면제도를 실시하였으나, 미분양주택 해소 등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감면대상을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하고 감면시한을 '10년 6월까지 1년 연장하였다.

둘째, '09년 12월 종료되는 주택거래세 50% 감면규정을 '10년 12월까지 1년 연장하였다. 부동산 거래추이, 부동산 가격변동 등 부동산시장 동향과 거래세수 증감현황 등 지방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감면규정을 1년 연장함으로써 부동산 거래 당사자의 세부담 급증을 완화할 수 있었다. 특히, 연말 국회의 대치상황에서 개별의 원에 대한 설명, 의사진행 협조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시간적 공백 없이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셋째, 자금애로 중소기업에 대한 탄력적 세정운영을 지원하였다. 일시적인 자금문제로 견실한 중소기업이 경영상 문제를 겪지 않도록, 금융경제가 안정화될 때까지 지방세 납부기한의 연장, 고지·징수·체납처분 및 정기 세무조사 등을 최대 1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이에 따라 '09년 한해 동안 전체기업의 약 1%에 해당하는 4,705개 기업이 세무조사를 면제받았으며, 405개 기업이 774억원에 이르는 징수·체납처분 등의 유예 혜택을 받았다.

넷째, 대도시내 법인의 부동산 등기 등록세 중과제도를 개선하였다. 당초 대도시내에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이 설립·설치·전입 등과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기의 경우에도 등록세가 중과되어 기업 활동에 제약을 주던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그와 “관련성”이 없는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 중과를 배제하도록 개선하였다.

3) 친서민적 지방세정 운영 및 국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지방세 제도개선

지방세정의 목적은 납세자인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얻어 지방재정 운용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납세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납세서비스에 취약한 서민층을 위한 지방세정 운영 보완에 더욱 노력하였으며, 지속적인 지방세 제도개선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첫째, 장애인 소유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절차를 개선하여 장애인의 생활불편 해소에 기여하였다. 지방세 감면은 주소지 시·군·구청에서만 받을 수 있어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도 주소지에서만 자동차 등록 및 감면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동일 시·도 내 모든 시·군·구청에서 자동차 등록 및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둘째, 서민금융 지원을 위하여 취·등록세 비과세 제도를 개선하였다. 저소득·저신용자의 자활을 도울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해 주는 미소금융재단 및 지역법인 등의 법인등기시 등록세를 비과세 하도록 개선하여 서민금융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도록 배려하였다.

셋째, 화물차로 등록되어 있으나 '06.1.1.자로 화물차에서 승용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된 밴형 차량에 대하여, 금년부터 승용차 세금을 내도록 한 자동차세 특례제도를 개선하였다. 화물차와 승용차의 자동차세액 차이가 커 밴형 화물차 소유자의 세부담 급증이 예상되었으나 금년 이후에도 화물차 세금을 적용토록 개선하여 약 36만명의 납세자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넷째, 국토부가 타워크레인 등록을 의무화('09.12.31까지)함에 따라 타워크레인 등록제 시행에 따른 세정운영기준을 마련하였다. 타워크레인 등록제 시행으로 타워크레인이 등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 외에 이전에 취득한 후 미납해 온 취득세 납부문제가 발생하는 등 민원발생의 소지가 컸기 때문이다. 타워크레인 소유자의 혼란, 일선 세무부서의 세정운영 일관성 결여 등을 방지하고자 중빙자료의 인정범위, 취득일 판단기준 등에 대한 세정운영 기준을 시달·적용토록 하였다. 아울러 세부담 급증에 따른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가산세의 한시적 면제, 세부담 가중시 징수유예 조치 등을 자치단체에 권고하였다.

4)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세정 운영을 위한 노력

먼저, 지자체 재정확충을 위하여 다양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방안을 추진하였다. 전년도에 비하여 체납세 징수목표를 상향조정(18.4%→25%)하고 고액·상습체납자 소유 재산에 대한 공매처분 실시 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3차례에



걸쳐 전국 지방자치단체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를 독려하였다. 특히, 차량의 이동성 등 특성상 체납발생율이 높은 자동차 체납세에 대하여 자치단체간 징수 촉탁 협약에 의하여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는 「지방세 징수촉탁제도」를 신설·운영 함으로써 고질적인 자동차세의 체납세 징수율 제고에 기여하였다.

둘째, 납세자에게 고품질의 지방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전국 지방세 법규해석담당자에 대한 3차례 집합교육을 통하여 세무공무원의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특히, 세법해석제도·민법 등 법규해석 기초 교육과 해석사례 등 실무교육을 병행하는 등 동 교육이 실제 납세자의 민원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지방세 관계법규·법규해석사례 등을 실시간으로 공시, 검색·열람이 가능하도록 「지방세 법규정보시스템(www.ltl.go.kr)」을 구축, 일반 국민들의 지방세 법규해석사례 접근성을 강화하고 자치단체 세무공무원이 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반성 및 시사점

1) 재산세제 정상화에도 불구하고 일부 문제점 지속

'09년 2월 주택분 재산세제 개편으로 일부 문제점을 해소하였으나, 주택가격이 급등락하는 경우 가격이 재산세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05년 당시의 기본틀을 유지하고 있어 급변하는 경제·사회적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단기적으로 국민 세부담 적정화 등 재산세제의 합리적 개편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방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재산권 제한에 대한 적정보상, 지역간 과세형평 등을 고려한 재산세 체계의 중장기 개편이 필요하다.

2)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세 기능 강화 필요

현재 세계 각국은 범지구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토의정서 등 기후변화 협약을 체결하고,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한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 범부처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또한, 최근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국가의 역할 및 정책 수요가 나날이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세 분야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수요에 부응하여 관련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과세 기능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배기량(CC)에 따라 부과 중인 자동차세를 친환경 기준인 CO₂ 배출량이나 연

비로 전환하는 방안이나, 출산을 장려하고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지방세 지원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3) 지방세 운영과정 등 미시적 제도개편 보완 필요성

그동안 매년 체납 및 과오납이 증가하고, 탈루·은닉 등 지방세수 누수현상이 계속 되고 있었으나, 근본적인 대책마련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조세는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것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조세환경을 신속하게 반영하여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나 제때 정비하지 못한 지방세 제도가 고질적인 민원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몇몇 제도는 존치되고 있는 불합리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신속한 개선을 추진하는 동시에 단순한 제도개선 수준에 머물지 않고 나아가 제도 연구기능을 강화하여 문제점을 사전에 진단하고, 신속하게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제도개선 프로세스 정립이 필요하다.

III. 2010년 지방세정 운영방향

1.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1) 환경친화적 자동차세제 개편

세계 각국은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 자동차의 CO₂ 배출량이나 연비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우리의 경우도 승용차의 '08년 기준 평균연비 11.47km/l, 평균 CO₂ 배출량 190.5g/km을 '15년까지 17km/l, 140g/km까지 달성하기 위한 국가 목표를 마련한 바 있다. ('09.7월, 녹색성장위원회)

이미 영국, 독일, 덴마크 등 유럽 선진국의 경우 자동차 보유 단계의 세금을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 또는 연비에 따라 부과하는 추세가 확산 중이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도 현재 배기량(cc) 중심의 승용자동차 과세 구조를 CO₂ 배출량 또는 연비의 친환경 기준으로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시점이라 판단된다.

친환경 자동차세 과세 구조는 CO₂ 배출량이 적거나, 연비가 높은 차량은 세금을 적게 내고, CO₂ 배출량이 많거나, 연비가 낮은 차량은 세금 부담이 커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하이브리드카, 클린디젤카 등 친환경 자동차 개발을 위한 업계의 노



력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는 보다 친환경적인 차량을 구매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자동차세제 개편은 환경·기술·산업·통상 등에의 파급 효과가 매우 큰 사항이므로 관련 쟁점들의 신중한 검토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연비개선 기술 및 CO₂ 저감기술의 발전 추세, 유종(휘발유·경유·LPG) 및 차종(신차·중고차)의 특성 반영 여부, 지방세수에 미치는 영향, 한미 FTA 비준을 고려한 통상현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2) 환경친화적 지방세제 개편 방향에 관한 연구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 하에서 에너지 관련 세제는 중장기적으로 ‘환경세(탄소세)’로 전환될 예상된다. 현재 지방세목 중 유일한 에너지 관련 세금은 주행세이다. 그러나, 주행세는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부가세(Surtax)로서, 자동차세 결손보전, 유가보조금 등으로 사용 용도가 한정되어 있어 환경과세로서 정책세제 기능이 없으며,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곤란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에너지 관련 세제의 탄소세로의 전환 추이에 발맞추어 주행세를 별도 독립 세화하고, 지역환경정책에 직접 기여할 수 있도록 용도제한이 없는 일반재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현재 별도 회계 및 기금으로 운영 중인 약 24종의 환경관련 부담금은 재정의 탄력성을 저해하고 조세에 비해 실효성이 낮은 한계가 있다. 오염유발행위는 오염이 발생한 지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환경관련부담금은 중장기적으로 환경 관련 지방세목을 신설하여 통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재산과세 제도의 합리적 개편

1) 토지분 재산세 체계 개편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05년도 이후 과세체계의 변화가 거의 없어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 검토가 시급하다. 특히 개발제한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과 같은 사권제한토지의 경우 공익목적으로 재산권의 행사가 제약됨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경감혜택이 낮아 불합리한 면이 크므로 세부담 경감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토지현황, 규제현황 및 세부담 현황에 대한 기초조사 등을 실시하고, 규제주체, 사권제한 정도 및 세부담 수준, 유사토지와의 과세형평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치단체에서 공익목적으로 사권을 제한하는 경우 지방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감면하여 줄 수 있는 제도도 아울러 검토하고,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율(4%)이 종부세 누진세율(2%) 보다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하향 조정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2) 주택분 재산세 체계 개편

'09년 주택분 재산세제 개편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함에도 세부담이 증가하는 왜곡된 재산세제를 일부 정상화하였으나, 아직도 주택가격 하락시 세액이 증가하거나 주택가격 급등시 인상폭이 재산세에 미반영되는 등 일부 미비점이 발견되고 있으며 미착공한 재발지역의 세부담 급증문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동일가액·동일 세부담” 원칙에 부합하는 상한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산세 세액이 주택가액에 상응하게 법정 산출세액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로 전환될 수 있도록 상한제 개선 등 단계적·점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 착공이 지연된 재개발 지역에 대한 세부담 경감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재산세체계의 일관성과 조세공평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감면조례를 신설하거나 지방세법령을 개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3. 새로운 사회 패러다임에 맞는 지방세목 개편

1) 골프장 관련 지방세제 운영 방안 검토

서비스산업 집중 육성으로 국가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관계부처 공동으로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이 수립·추진(‘08.4.25~)되었다. 동 방안에는 해외 골프수요의 국내 전환을 위하여 지방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지방세(재산세·취득세), 국세(종합부동산세·개별소비세), 체육진흥기금 등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세제 지원은 골프장의 경영혁신 노력과 연계하고 이를 점검·관리하기 위하여 일몰제(2년)로 운영되고 있다.

금년에는 기획재정부, 문화관광체육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지방회원제 골프장 세제 지원에 따른 그린피 인하 효과, 해외 골프수요의 국내 전환 효과, 업계의 경영 혁신 노력 유무 등 세제지원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한편, 최근의 골프 이용 인구 및 공급 현황, 다른 스포츠와의 과세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세제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지방 회원제 골프장 세제 지원 현황 〉

구분	세제 지원 내용		일몰 시한
국세 · 부담금	개별소비세 등(21,210원), 체육진흥기금(3,000원) : 전액감면		'10.12.31한
	종부세(원형보전지)	종합합산 → 별도합산 특례 (공제 200억, 세율 0.8%)	
지방세	재산세(원형보전지)	종합합산 → 별도합산	'08, '09년 부과 분
	재산세(골프장, 건축물)	분리과세 4% → 2%	
	취득세	10%(5배중과) → 2%(일반과세)	'10.12.31한

2) 출산장려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지방세제 개선

현재의 저출산 추세가 지속될 경우 경제성장 둔화, 고령화로 인한 재정부담 증대 등 총체적인 국력약화가 초래될 우려가 높다. 이러한 대외 경쟁력 약화에 대비하기 위한 지방세제 측면의 출산장려 지원 및 고령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20~30대 중산층 등 정책수혜 효과가 높은 수혜대상을 우선 선정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효과가 최대화될 수 있는 세목을 선정하는 등 합리적 세제지원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할 예정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농촌 공동화 등 파생되는 경제·사회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세제 지원방안도 아울러 강구할 계획이다.

4. 지방세제 운영의 선진·전문화

1) 지방세 과세표준제도의 선진화

현재 토지와 주택은 시가방식에 의한 공시가격을 과표로 활용하는 반면, 건축물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원가방식에 의한 건물시가표준액을 사용하고 있어 과표와 실거래 가격 간에 괴리가 있는 등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서는 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에도 토지와 주택과 같은 공시가격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은 주택에 비하여 가격형성요인이 다양하고 복잡해 적정가격을 산정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국토부의 공시가격 도입 추진상황 등을 다각도로 연구하여 선진화된 가격산정제도를 연구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실거래가보다 현저히 높은 비주거용 부동산 과표의 경우 각 지방자치

단체가 자체적으로 허용된 30%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과표를 조정하여 시가에 균접한 과세를 할 수 있도록 현지 지도할 계획이다.

한편 상대적으로 과표 현실화율이 낮은 저유조, 풀장 등 시설물과 차량·선박 등에 대한 철저한 시가조사 등을 통하여 납세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이고 연차적으로 현실화하여 적정세액을 과세할 계획이다.

2) 지방세 체납정리 지속 추진

매년 지방세 징수액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세 체납액도 아울러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세 체납액을 감소시키고, 효율적으로 체납처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체납관리·징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지자체의 체납처분 실시여부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의 체납정리과정상 애로사항,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체납관련 유관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성실납세 풍토를 흔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표, 신용불량자 등록 요구, 강력한 체납처분 등을 실시함으로써 성실납세 기반을 구축하고, 지방세 체납 우수단체에 대하여는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체납세 정리 노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신설 운영중인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고질적인 자동차세 상습체납액을 계속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동 제도가 어느정도 자리잡게 되면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대포차량 정리에도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3) 지방세 탈루·은닉세원 발굴 종합대책 추진

자치단체 세무조직과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지방세를 부과하여야 할 세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방세 세원이 누락 없이 과세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점검시스템이 필요하다. 특히,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는 탈루·은닉세원 여부에 대하여 과세기초자료(예, 토지소유권변동자료) 등과 지속적인 대사점검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자치단체 등 의견을 수렴하여 탈루·은닉 발생률이 높은 세원과 그 원인을 분석하여 탈루·은닉세원임에도 부과제척기간을 도과시켜 과징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징·세무조사기법을 체계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과세자료 DB 오류 및 불일치 자료추출기법을 마련하거나 다른 전산망과의 연계를 통하여 누락세원을 체계적으로 발굴하는 등 과학적인 방법을 통하여 지방세원을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4) 지방세정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급격한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사회현상의 복잡·다양화에 따라 납세자 민원 및 불복청구가 매년 급증하고 있어 세무담당 공무원의 업무역량 향상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지방세 법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법규해석 개선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시스템에 지자체간 법규해석이 다른 사항이 등록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를 조정하여 일관된 법규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커뮤니티 활동과 덧글쓰기 등 참여식 제도개선 건의 창구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무공무원을 단순 법령집행자가 아닌 조세전문가 수준으로 육성토록 할 계획이다. 매분기마다 주요 법규해석사례 중심으로 참여식 집합교육을 실시하되, 실무 교육 외에도 조세이론·법규해석이론 등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행정연수원에 「지방세 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매년 2회에 걸쳐 내실있는 지방세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IV. 맷음말

'09년말 기업의 결산결과를 살펴보면 전년도에 비하여 흑자전환 되거나 흑자폭이 늘어난 기업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년도 경제전망을 낙관하기에는 아직 체감경기가 크게 회복되지 않았고, 재정조기집행 시행, 감세기조 유지 등으로 지방재정 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이 아직은 낮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09년 경제위기의 초기탈출을 목표로 비상경제정부 체제로 국정을 운영한 결과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전세계적으로도 빠른 경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조만간 우리나라 경제에 활력이 되살아나 지방재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기대를 바탕으로 지방세정 분야에서는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원활한 세정운영 외에도, 새로운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복잡·다양화 되는 조세환경에 부응하여 지방세정 운영의 전문화와 선진화를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